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금액 상향 >
■ 이성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06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성윤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9. 11.

다. 회 부 일 : 2025.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것으로, 기준 도입 이후의 재정 규모 확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기준을 현실에 부합하게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및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안 제38조제1항)

현행	개정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 SOC 및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 그 외 사업: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SOC 및 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지정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¹⁾ 등의 연구기관이 사업의 경제성·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안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점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제도임.²⁾

1) 국가연구개발(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함.

2) 참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DB) 누리집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 포함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³⁾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과 비교하여 2024년의 경우 명목 GDP는 591조원에서 2,549조원으로 약 4.3배 증가하였고, 정부의 재정규모(본예산 총지출 기준)도 145조원에서 657조원으로 약 4.5배 증가하였으며,⁴⁾ 물가도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준으로 1999년과 비교하여 2024년에는 1.8배 상승하였음.⁵⁾

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 국가통계포털(KOSIS), 기획재정부, 2024. 7.

5)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개편한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199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1.76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8를 기록함(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이에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물가 상승 및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하여 SOC 및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려는 취지임.

물가상승과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의 기준금액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계속 증가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품질저하 또는 기간 지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평균 조사기간은 17.6개월로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인 9개월⁶⁾을 8개월 이상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조사기간]

(단위: 건, 개월)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조사완료 사업수	34	13	28	16	8	19.8
조사기간	19.3	16.2	16.3	18.1	15.6	17.6

주 1) 연도는 대상 선정 시점 기준

2) 자료는 2025년 3월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6)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9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①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대 18개월(철도부문 24개월) 이내에서 수행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대상사업의 성격상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이 9개월(철도부문 12개월)을 초과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 때,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수행기간 종료 시점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행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34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 때, 중앙관서의 장은 변경된 사업내용 등과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에 조사 역량을 집중해 예비타당성조사의 품질을 제고하고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해당 사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물가상승이나 재정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준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수의 감소 추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이]

(단위: 건, 조원)

구분	면제 건수	규모
2005	3	0.7
2009	30	26.0
2014	40	14.5
2019	47	36.0
2020	31	30.0
2021	31	10.5
2022	26	17.2
2023	28	12.0
2024	39	17.4

자료: 기획재정부

참고로 최근 5년간 분야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현황은 다음과 같음.⁷⁾

[최근 5년간 예비타당성조사 현황]

(단위: 건, 조원, %)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건수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규모			
	전체	SOC	R&D	기타	전체	SOC	R&D	기타
2020	52	10 (19.2)	37 (71.2)	5 (9.6)	31.4	5 (15.9)	25.5 (81.2)	1 (3.2)
2021	60	21 (35.0)	23 (38.3)	16 (26.7)	74.9	26.9 (35.9)	20.5 (27.3)	27.6 (3.7)
2022	40	12 (30.0)	16 (40.0)	12 (30.0)	28.5	10.4 (36.5)	9.1 (32.1)	9.0 (31.5)
2023	44	23 (52.3)	12 (27.3)	9 (20.5)	44.3	31.1 (70.3)	7.9 (17.9)	5.2 (11.8)
2024	33	10 (30.3)	11 (33.3)	12 (36.4)	25.1	15.3 (61.0)	6.0 (23.9)	3.8 (15.1)

자료: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다수 제기된 반면, 재정준칙과의 연계 처리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대립되었음.⁸⁾

둘째, 개정안은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도 상향하려는 것인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 9월 25일에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7) 참고로, 기획재정부는 사업 여건 변화, 사전 검증절차,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SOC 분야에 한정하여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2024. 11. 27.),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2025. 2. 1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2025. 9. 16.) 등

그리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연구형 R&D의 사전기획점검 제도, 구축형 R&D의 사업추진심사 제도 등 보완제도를 신설하려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5년 7월 7일에 의결되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 장관은 <u>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u>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 -----다음----- -----대규모 신규사업----- ----- ----- ----- ----- <u><단서 삭제></u>
1. <u>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u>	1. <u>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u>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도로 건설공사</u>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u>철도시설 건설공사</u>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도시철도시설 건설공사</u>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u>항만시설 건설공사</u>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u>다른 공항시설 건설공사</u> 바. 「<u>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u>댐 건설공사</u> 사. 「<u>수도법</u>」 제3조제5호에 따른 <u>수도 건설공사</u> 아. 「<u>하천법</u>」 제2조제3호에 따른 <u>하천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건설공사</u> 자. 그 밖에 <u>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항만시설·공항시설·댐·수도·하천시설 및 각 시설의 관련 시설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u>
2. 「 <u>지능정보화 기본법</u> 」 제14조제1항에 따른 <u>지능정보화 사업</u>	2. 「 <u>과학기술기본법</u> 」 제11조에 따른 <u>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u>
3. 「 <u>과학기술기본법</u> 」 제11조에 따른 <u>국가연구개발사업</u>	3. <u>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u> 가. 「<u>지능정보화 기본법</u>」 제14조제1항에 따른 <u>지능정보화 사업</u> 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u>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u>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u>사업</u>	4. ----- ----- ----- ---사업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u>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u> 수반되는 사업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5